불용품처분규정 4-5-5

규정번호 4-5-5
제정일자 1997.6.18
최근개정 2018.12.10
개정차수 9차 개정
관리부서 구매시설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용품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정확히 하여 우리대학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불용품) 이 규정에서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사용가치가 없거나 유휴비품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2. 철거된 자재로서 사용 불가능한 물품
3. 기타 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물품
4. (삭제)

제3조(처분 및 반환) ① 불용품의 처분은 사무처 구매시설팀에서 주관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② 비품이 노후 또는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처분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교육용 비품의 처분은 산학협력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제4조(승인) 불용품의 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5조(대금의 입금) 불용품의 처분대금은 학교비 예산에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정리) 불용품으로 처분된 비품은 등재대장에서 삭제하고 물품이력카드란에 처분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50> <생략>

<51> 불용품처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2> - <102> <생략>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27> <생략>

<28> 불용품처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①항의 “시설관리과”를 각각 “시설관리팀”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29> - <49> <생략>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17> <생략>

<18> 불용품처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②항의 “산학협력처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

<19> - <30>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02.27., 2018.08.27.)

불용품처리통보서

담당	팀장	처장	총장

물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비품번호	비치장소	비 고

처리사유 :

처리요망사항 :

위와 같이 불용품을 처리하고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비품관리책임자 : ㊞
(과·실·처·부장)

처리방법 :